

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





■ 추진 배경

-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, 재교육 및 훈련 기회 부족
- 베이비부머 세대의 장기요양 진입, 수급자 규모 확대
- 장기요양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가

■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개편

-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





■ 직무[職務]교육

- 정의: 직무 종사자가 **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** 실시하는 교육
- 직무교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
각 종사 업종에 맞는 교육이 필요

■ 보수[補修]교육

- 정의: **자격취득자**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, 기술·기능 및 **지질 향상을 도모하기** 위하여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제공, 보충하는 교육으로
각 협회를 주관으로 **주기적으로 계속 실시**
- 보수교육을 위탁 할 만한 공식적인 요양보호사 협회가 존재하지 않아,
공단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



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

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

● 보수교육 목적

-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,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

● 보수교육 법적근거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3조2항 [장기요양급여의 종류]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령 제11조의2 [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]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 제11조의3 [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]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 제11조의4 [보수교육의 실시]



■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 제11조의4 (보수교육의 실시)

-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 1. 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
 2.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 - 가.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
 - 나.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
 - 다.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

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

● 보수교육 개요

- [교육대상]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
 - ※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,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 이수 대상
- [면제대상] ①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(예시) 22년 합격자는 23년, 24년 보수교육 면제: 25년 홀수년생 시작
- ②그 밖의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- ※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(23.8.~10.) 내 교육 이수자는 24, 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
- [교육주기]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
- [교육방법] 대면(8시간) 또는 온라인(4차시)+대면(4시간)
- [교육과정] ①요양보호와 인권, ②노화와 건강증진,
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,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
- ※ 4개 필수영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, 각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
- [관리기관] 국민건강보험공단
- [실시기관] 한국보건복지인재원,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

[교육비용] 36,000원(대면, 8시간), 30,000원(대면 18,000원+온라인 12,000원, 8시간)

※ 교육생(요양보호사)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, 면제 및 할인할 수 없음

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

■ 교육과정 (필수영역)

- 대면 교육은 1월 1회, 8시간이 원칙(다만, 동일 교육기관에서 월 2회*까지 분할 이수 가능)

* 같은 월의 초일~말일까지를 의미

- 4개 필수영역별 1강의(2시간)씩, 총 8시간으로 운영

대면

- 가. 요양보호와 인권(2시간)
- 나. 노화와 건강증진(2시간)
- 다. 요양보호와 생활지원(2시간)
- 라.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(2시간)

- 온라인 교육은 1인 최소 4시간 (수강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 수강)

- 온라인 교육 미 수강 영역은 60일 이내(당해 연도 내) 대면 교육 수강(3회 이상 독려)

온라인

- 가. 요양보호와 인권(2시간)
- 나. 노화와 건강증진(2시간)

대면

- 다. 요양보호와 생활지원(2시간)
- 라.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(2시간)

60일 이내
(당해 연도 내)
완료해야함

온라인 먼저
대면교육
미이수시
불인정